

대구광역시달서구의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	95-61
번호	

제출년월일 : 95. 12.

제 출 자 : 운영위원장
(운영위원회안)

1. 제안이유

- 자치구의회의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코자 정원이 승인되고 관련직급 및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95년12월26일자로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이 심의 의결되므로써 관련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와 위원회조례의 개정과 아울러 관련규칙인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함.

2. 관련근거

- 기획12200-1085('95. 12. 19) 자치구의회 「사무과」의 「사무국」 정원승인

3. 주요골자

-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자구 수정함
(안 제2조, 제3조, 제46조, 제78조)

4. 개정규칙(안) : 따로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의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의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사무과장에게”를 “사무국장에게”로 한다.

제3조 제2항중 “사무과장이”를 “사무국장이”로 한다.

제46조 제1항중 “사무과장이”를 “사무국장이”로 한다.

제78조 제1항중 “사무과장이”를 “사무국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2조(등록)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		제2조(등록)..... <u>사무국장에게</u>	

현행	개정
<p>제3조(의석배정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<u>사무과장</u>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p> <p>제46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회의록에는 의장·의장을 대리한 부의장,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<u>사무과장</u>이 서명 날인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.</p> <p>제78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<u>사무과장</u>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</p>	<p>제3조(의석배정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u>사무국장이</u>.....</p> <p>제46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.....<u>사무국장이</u>.....</p> <p>제78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.....<u>사무국장이</u>.....</p>